

# 2008년 하반기 음부즈만 활동실적

## I

## 일반 현황

### ■ 시민감사음부즈만 개요

- 근거 : 시민감사음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구성 : 5명
  - 최 성 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7. 6. 1 임명)
  - 신 영 철 (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2008. 1.14 임명)
  - 이 경 섭 (전 감사원 국장, 2008. 6.11 임명)
  - 김 경 수 (전 토대건축사무소 대표이사, 2008. 6.11 임명)
  - 정 재 실 (전 감사원 국장, 2008. 8.17 임명)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설치 및 지위 : 시장 소속 하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조례 제31조(보고)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실적을 시장과 시의회 보고

### ■ 시민감사음부즈만의 직무

-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일정금액 이상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등에 대한 감시·평가 및 감사·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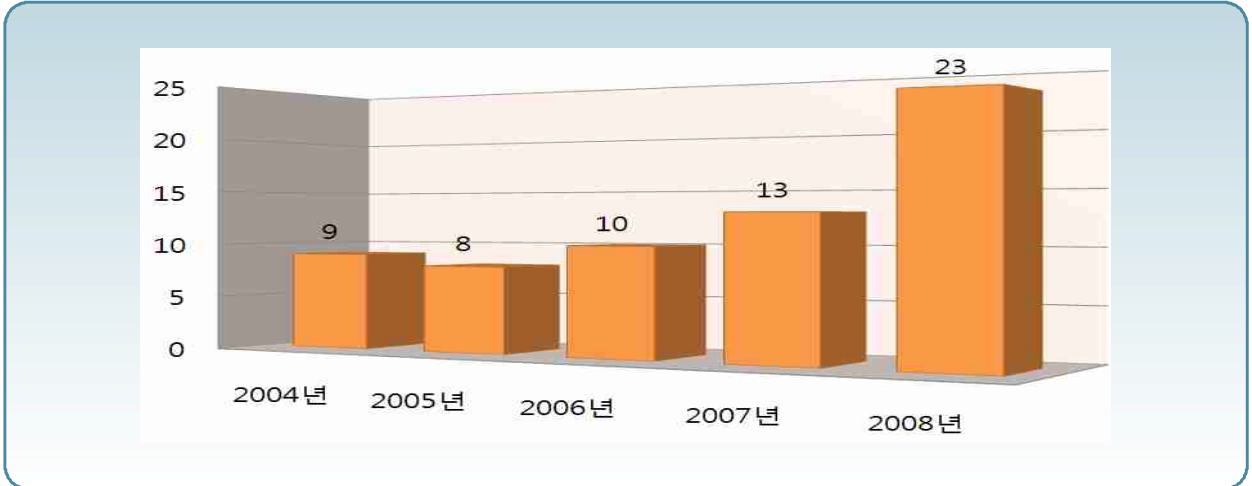
### ■ 지원조직 : 시민감사관팀 8명

- 팀 장 : 1명 (행정 5급)
- 팀 원 : 7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직 1명)

## II 감사분야 활동실적

### 최근 5년간 감사 현황

(단위 : 건)



※ 2007.10.30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음부즈만제도 통합

### 2008 감사결과 조치 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만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계	추징	환급	계	고발	징계	훈계 등
61	56	5	82,359	49,925	32,434	75	-	9	66

※ 감사결과 시정조치 후 지체상금 징수액 : 42억

### 2008 하반기 감사현황

구분	처리			비고(진행중)
	계	완료	진행	
주민감사	16	1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북구 성북 ○구역 재개발 관련</li> <li>▶서대문구 북아현△구역 재개발 관련</li> <li>▶성동구 금호 ○○구역 재개발 관련</li> </ul>

## ■ 감사결과 주요 내용

### 강서구 공동주택 사업승인 위법사항 시정조치

- 민영주택사업승인 신청 된 강서구 마곡동 ○호외 7필지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이적지가 포함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 강서구에서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 승인하도록 시정 조치함

### 구의회 의원 의정비 부당인상 재심의 및 환수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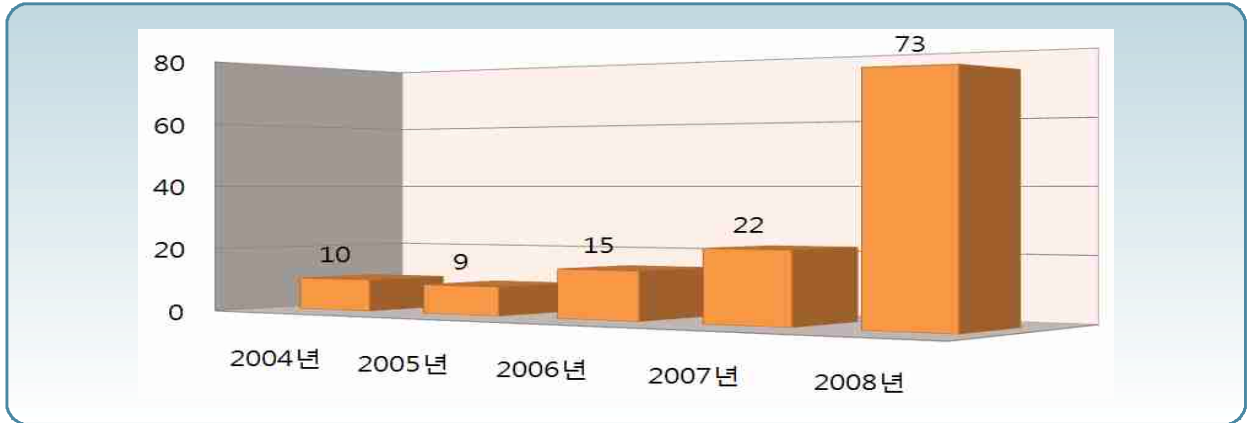
- 자치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후 각계 단체들로부터 2~3배수의 복수추천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사전에 잠정결정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급기준금액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감사를 실시한 10개 자치구의 경우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의정비 지급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정비를 재심의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지급기준을 결정하면서 재적위원 과반수(6명 이상)에 미달하는 심의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돼 의원 16명 1인당 1,542만원씩 계 24,672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음
- ➔ 시정요구사항 이행실태
  - ※ 광진구 4,187만원(당초 5,500) / 양천구 4,100만원(당초 5,456) / 금천구 4,032만원(당초 5,280) / 성동구 3,816만원(당초 5,550) / 노원구 4,230만원(당초 5,480) / 중랑구 3,744만원(당초 5,040)
  - ※ 서대문구 : 감사결과 환수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

■ 청구사항 목록 및 처리내역(13건) : 별첨 1

Ⅲ 청렴계약분야 활동실적

■ 최근 5년간 활동 실적

단위 : 건



■ 감시활동 총괄

- 감시(관리)대상 사업 총351건에 대하여 추진상황 관리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실태 및 적정여부 확인
- 중점감시활동 대상사업 확대('07년 22개 → '08년 43개)
  - 하도급 관리실태 및 청렴계약의 성실히행 여부 중점감시

■ 감시활동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현장 감시	입회	비 고
계	73	24	49	
2008 상반기	24	1	23	
2008 하반기	49	23	26	

● 감시결과 조치 내용

(단위 : 건)

계	시정권고	주의촉구	현지시정	제도개선 (횡단전개)	비 고
24	6	8	6	1	진행중 3

## ■ 청렴계약 감시결과 주요내용

지하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시정권고

-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인력기준을 기초로 산출하고 있음에도
  - 지하철 1~ 4호선 안전진단 실시 용역업체들은 위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체결시 기준대가의 인력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인력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입하는 인원수에 따라 실비 정산하도록 시정

시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문제점 시정 권고

- 기본설계 적격자(삼성물산) 선정 이후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나 변경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디자인으로 실시설계 ⇒ 설계적격심의 ⇒ 계약체결 ⇒ 새 디자인으로 실시설계 ⇒ 설계적격심의 ⇒ 변경계약 체결’이라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음
  - 또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층고 및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지하4층을 지하5층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됨
  - ➔ 당초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등의 절차이행은 비효율적·낭비적 요인이 많으므로 정책회의 등을 통해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당초 내역서와 변경될 내역서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비목 증가 및 특수공법 도입으로 시공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문제점 시정권고

- 한강상 교량 중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2개 교량(올림픽대교, 반포대교)에 대한 교량성능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 교량성능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부속장치들(교자장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부서나 인력 없이 시공사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으로 공사 실시
- ➔ 국내의 전문가집단(한국도로공사, 한국화학시험 연구소, 전자재시험연구원등)과 연계하여 직접 품질시험 수행 또는 생산업체 성능시험 때 전문가를 입회시켜 품질이 인정된 제품으로 시공토록 조치

## ■ 청렴계약 감시활동 목록 및 처리내역(23건) : 별첨 2

### IV

### 기타 활동실적

### - 민원배심제 참여

도로용지 기부채납 후 자진 납부한 취득세 환급토록 조정

-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기부 채납한 후 자진 납부한 취득세 1억 7800여 만 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환급해 주지 않아 5년 여에 걸쳐 벌어진 분쟁에 민원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민원해결
- ➔ 장기·고질민원의 조정·중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여

### V

### 옴부즈만 운영성과 및 과제

- 주민감사 및 청렴계약 대상사업 감시활동 강화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주민감사 : 13건 → 23건, 청렴계약감시 : 22건 → 73건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국민신문고 대상”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기관표창(국무총리, 자치단체 중 최우수), 유공공무원표창(대통령, 시민감사관팀장)

※ 시정청렴도 1위 유지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인력 확충 : 1팀 8명 → 2팀 13명

2008하반기  
옴부즈만 활동실적보고 첨부물

별첨 1. 주민감사청구사항 처리내역

별첨 2. 청렴계약감시활동 처리내역



별첨 1.

# 주민감사청구사항 처리내역

연번	청구일자	대상기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비 고
1	'07.03.29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08.06.13~08.11	완 료
2	'08.03.17	강서구	◦마곡동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관련	'08.08.13~10.11	완 료
3	'08.04.25	양천구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08.06.27~08.25	완 료
4	'08.05.01	금천구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08.06.27~08.25	완 료
5	'08.05.14	중랑구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08.09.19~11.18	완 료
6	'08.06.10	성동구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08.08.14~10.12	완 료
7	'08.06.19	노원구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08.08.14~10.12	완 료
8	'08.06.03	구로구	◦구로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진출 관련 주민감사	'08.10.10~12.9	완 료
9	'08.05.08	동대문	◦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08.11.13~11.19	완 료
10	'08.06.23	서대문	◦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8.11.20~11.26	완 료
11	'08.08.08	서대문	◦북아현○지구 재개발 관련	'08.11.20~11.28	완 료
12	'08.08.18	구로구	◦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08.12.01~12.05	완 료
13	'08.11.11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08.12.15~12.19	보고서 작성중

## 1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박○○(강북구 미아동 122번지 8호)외 210명
- 청구일자 : 2007. 3. 29
- 대상기관 : 강북구청
- 청구요지

강북구청장이 청소용역업체 선정업무에 있어 자격미달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강북구 주민들에게 청소서비스 저하와 예산낭비의 피해를 주어 감사를 청구함.

### ■ 감사 추진경위

- 2007. 4.30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리(수사 종결시 감사착수)
- 2008. 4.23 : 북부지방검찰청 수사종결 (관련공무원 무혐의)
- 2008. 6.19 : 감사계획 수립
- 2008. 6. 25 ~ 7. 3 : 강북구청 현지감사 (7일)
- 2008. 7. 11 : 감사종료 보고

### ■ 감사결과

#### 1. 계약 중단한 청소용역업체인 △△환경(주)과 새로이 선정된 ○○환경(주)이 동일한 업체인지 여부

- ○○환경과 △△환경은 각각 법인의 회사명, 대표이사, 주주 구성 등 형식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일치한 사실, ○○환경 대표이사 및 이사가 △△환경의 직원과 대표이사이며, ○○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인력확보 계획, 장비확보계획 등으로 △△환경이 법인명의만 바꿔 응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06.12.26.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환경 임직원이 ○○환경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 주민만족도 평가결과로 계약중단 한 업체가 명의만 변경하여 신청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존 △△환경의 인원, 장비 등을 인수 받는다는 요약내용만 심사서류에 기재한 채,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민단체 2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

### 3. 동일업체 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청과 업체간 비리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요구

-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강북경찰서에서 수사를 실시하고, 강북구청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 업무를 잘못처리한 점은 있으나 위 확인내용과 같이 업체선정에 비리가 있다는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음.
- ➔ 사실상 계약 중단한 업체가 신청한 내용임을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동일업체가 선정된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문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조치.

### 4. 청구내용 이외의 사항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
  - 2005년 『청소대행업체 평가계획』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줄이거나 청소대행 구역 1개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평가계획 수립하여
  - 2005.6.15~6.25까지 평가한 결과 △△환경은 평가점수 67.9점으로 대행구역 1개동의 축소에 해당됨에도 여름철에 청소구역을 변경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사실과 달리 71.1점으로 보고하여 6개월 재계약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
- ➔ 주민만족도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하고, 행정상 주의조치

●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시 현장 확인 업무 소홀

- 2007. 2. 2. ○○환경의 폐기물처리업 처리허가를 처리하면서 ○○환경이 제출한 자가주차장(424㎡)은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노원구 직영 청소차량 차고지의 진출입로 등이므로 현실적으로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허가처리 하였음.

➔ 현장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문책하고, ○○환경에게 실질적인 자가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

● 청소용역업체 소요장비 및 인력확보 부적정

- 2007.11.22 『민간대행구역확대조정 시행계획』 수립하여 직영구역인 1개동을 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환경으로 하여금 청소차량 1대, 인원 2명을 충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업체에서 인원 1명만 증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해 12.18.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 청소인력 및 장비를 계획대로 충원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관계공무원은 문책하고, 부족하게 계약된 청소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는 소요장비 및 인력을 재산출하여 확보토록 시정조치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4건(시정 2, 주의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주의)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주의)
-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시 현장 확인 업무 부적정(시정)
- 청소용역업체 소요장비 및 인력 확보 부적정(시정)

● 신분상 조치 : 훈계 5명

● 제도개선 검토과제 : 2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주의)
-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부당처리(주의)

## 2 강서구 마곡동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사업승인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서○○(강서구 마곡동 벽산아파트)외 200명
- 청구일자 : 2008. 3. 17
- 대상기관 : 강서구청
- 청구요지

강서구청장이 마곡동 ○외 7필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을 사업계획승인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

- 사업계획승인신청 된 마곡동 ○호외 7필지 민영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적지(공장부지를 포함함)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바, 사업부지내에 공장이적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 확인하여야 함에도
  - 사업부지에 포함된 마곡동 △호(지목:장, 면적 419㎡) 공장용지는 공장이적지일 뿐만 아니라, 마곡동 □호(지목:대 면적 247㎡)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1의3] 제2호 가목(1)에서 규정한 “공장”임에도 관계 규정 검토 및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마곡동 □호를 공장이적지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 하였으며
  - 2007.12.4 사업주체가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요청”의 사업주체 의견과 제7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음”이란 자문결과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규정에 위반됨에도

- 지문결과를 그대로 주택과로 통보함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5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을 위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음.

➔ 공장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본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토록 시정조치

## 2.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소유권 확인 적정여부 확인

● 2007.12.4 제출된 강서구 마곡동 ○외 7필지상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를 2006.1.25 주택과에서 사업계획승인 처리하면서

-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함에도

- 사업부지에 포함된 강서구 마곡동 △호 공장용지가 ○○건설(주) 소유로서 2007.12.4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된 토지 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기간 (2007.7.5 ~ 2007.10.4)이 기재된 것으로서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토지의 권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를 확인하지 못한 대지상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음.

➔ 토지사용승낙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권원이 없는 토지에 사업계획승인한 결과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

➔ 향후에는 사용기간이 기재된 토지 사용승낙서는 보완요구하는 등 소유권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 부적정(시정)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소유권 확인 소홀(주의)
- 신분상 조치 : 5명(경징계 1, 훈계 4)



### 3 양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김○○(양천구 신정4동 957-3)외 266명
- 청구일자 : 2008. 4. 25
- 감사대상 :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 청구요지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양천구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나 토론 등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조례를 개정한 바, 의정비 54% 인상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고 적법하게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회 구성시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수추천이 접수된 단체나 추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동일 단체나 동일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의정비심의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일부위원에 대해서 관내 거주요건만을 확인하였을 뿐 별도의 적격성 여부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단수추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고, 추천된 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 등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관련 세부지침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심의에 임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충분한 사전설명회 미흡하였으며

● 특히, 제4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위원 9명 출석에 5명 찬성(출석 과반수)으로 의정비 지급 상한액을 4,000만원으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결정하였으나, 의사결정족수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일부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인해 제5차 의정비심의회에서 특별결정족수(재적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하고 최종 의정비 지급금액을 5,456만원으로 상향 결정하는 등 심의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심의회가 위법·부당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의정비심의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여론조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회가 잠정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먼저 2008년도에 지급하고자 하는 의정비 지급액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잠정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결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답변항목에 의정비 인하는 없고 인상만을 묻는 내용으로 설계하는 등 설문내용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작성함으로써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인상률)을 잠정결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문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 문안을 작성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위법·부당한 사항임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만 결정하고,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서 조사문안 작성 및 여론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 3. 의정비 54%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부당성을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으므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인상률 명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반영하는 등 적법한 법정절차를 거친 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부당성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 4. 개정조례안 처리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전체발의 안건이라는 사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심의를 하였음
- ➔ 향후 구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시에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가 요구됨

#### 5.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가 미비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음
  - 50만원이상 접대성 경비 8건 5,786천원에 대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집행
-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사적경비나 격려비, 자료수집비 명목 등으로 집행되었음
  -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43건 7,067천원 집행
  - 경조사비 3건 300천원, 구의원 생일축하 등 격려비 31건 5,410천원, 백○○ 의원 입원치료비 315천원 집행

- 구의원의 운동복, T셔츠, 운동화, 모자 구입비 2,409천원 집행
- 5회에 걸쳐 국내외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 17명에게 총 930만원을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과 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3건(시정 1, 주의2)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구의회 위원회 안건 심사절차 준수 철저(주의)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4건(경징계 1, 훈계 1, 주의 4)

## 4 금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안○○(금천구 독산1동 147-60)외 296명
- 청구일자 : 2008. 5. 1
- 감사대상 : 금천구청, 금천구의회
- 청구요지

금천구의회가 2007.12.14일자로 통과시킨 조례개정(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절차나 방법의 적법성 여부 및 주민여론조사의 적정성, 의정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방청신청과 관련한 구의회의 위법성, 재정자립도나 주민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금천구에서 월정수당 130% 인상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시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수추천이 접수된 단체나 추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동일단체나 동일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금천구의회에서는 최종 5명에 대해서 관내 거주요건만을 확인하였을 뿐 별도의 적격성 여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5명 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할 수 없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단수추천만 받았거나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고, 추천된 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 등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단체장 소속의 의회지원 담당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령의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회가 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잠정 결정된 지급액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에 따라

- 심의위원회에서는 잠정지급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과 직접(수기)조사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음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의정비심의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 2. 주민여론조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주민여론조사 절차 및 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한 후, 그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 금천구에서는 잠정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답변항목에 의정비 인하는 없고 인상만을 묻는 내용으로 설계하는 등 설문내용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작성함으로써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에 의하면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금천구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공신력있는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확보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 주민의견 수렴시 의정비 잠정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없이 제3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관련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잠정결정한 의정비(금액, 인상률 등)를 가지고 공신력 있는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여론조사 설문서 작성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 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설문서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를 결정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비교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문서 문안을 작성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음

- ➔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 내용에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서는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3. 월정수당 132%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부당성을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으므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반영하는 등 적법한 법정절차를 거친 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부당성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 구의원의 운동복, T셔츠, 운동화, 모자 구입비 2,409천원 집행
- 5회에 걸쳐 국내외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 17명에게 총 930만원을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과 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4. 구의회 본회의 방청허가 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 지방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함이 원칙이며, 금천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하면 방청할 수 없는 자(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방청의 제한(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 방청권 교부를 신청할 당시에 방청석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청석의 여유가 없다는 사유로 방청권 교부를 거부한 것은 금천구의회 방청규정을 위반한 것임
  - ➔ 구의회 방청허가와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방청규정을 위반하여 방청을 거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구의회 방청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금천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을 할 수 없는 자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방청을 허용하도록 조치

#### 5. 의정활동비(월110만원)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의정활동비 집행 적정여부 확인

-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급이 아니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 따라서 2007년도 금천구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집행과정의 위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②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행안부훈령 제204호, '06.7.31)」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강원도 영월·횡성, 경남 남해·창녕 등 지방에서 29건 2,503천원 집행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경비나 사적인 경조사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의원 10명에게 국외여비 외 추가로 1인당 100천원 씩 총 1,000천원의 의정활동수행 경비를 2007.1.24일 현금지급
    - 격려비로 4건 3,014천원, 경조사비로 3건 200천원 집행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과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6건(훈계 2, 주의 4)

## 5 중랑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정○○(중랑구 면목4동)외 318명
- 청구일자 : 2008. 5. 14
- 감사대상 :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 청구요지

중랑구의회는 2007.12.21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주민설문조사의 적정성 여부 및 월정수당을 160만원에서 310만원으로(전년대비 93.75%) 인상한 것이 적정하고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시 법조계를 제외한 다른 분야별 단체에는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 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추천하거나 구의회 의장단에서 직접 섭외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관내 거주요건 만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였을 뿐 적격자 여부 심사를 소홀히 하여 선거권이 없는 결격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공문으로 추천의뢰하지 않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8.10.8, 대통령령 제21075호)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 등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심의위원들이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관련 세부지침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심의에 임하도록 해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의 심의회 운영 미숙으로 의정비 최종 지급수준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 심의회가 해산된 이후에 심의위원 중 결격자가 발견되어 결격자 1명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심의회를 재구성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등 심의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었음

➔ 의정비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의정비심의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 2. 주민여론조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는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 중랑구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의정비 총액기준 4%~69%의 인상을 전제로 한 설문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된 여론조사였다고 볼 수 없음

➔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3. 월정수당 132%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는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10.8, 대통령령 제21075호)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의정비 잠정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 4.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가 미비된 상태에서 매출전표만을 첨부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며

-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의원개인의 사적경비나 주민의 대표인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5명(훈계 3, 주의 2)



## 6 성동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정○○(성동구 행당2동)외 326명
- 청구일자 : 2008. 6. 10
- 감사대상 :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 청구요지

성동구 의회는 2008년도 의정비를 전년도 3,146만원 보다 76% 인상한 5,550만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의정비심의회 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않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있음. 또한, 구청은 심의위원, 여론조사 및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바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밝히고자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 의정비심의회 구성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1배수만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로부터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사업(성동구상공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구의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할 수 없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단수추천만 받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고, 추천된 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 2. 주민여론조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회가 잠정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먼저 2008년도에 지급하고자 하는 의정비 지급액을 잠정결정(전년대비 인상률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결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답변항목에 27% ~ 91%가 인상된 금액만을 제시하는 등 설문내용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작성함으로써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인상률)을 잠정결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문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 문안을 작성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위법·부당한 사항임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잠정지급 기준액만 결정하고,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서 조사문안 작성 및 여론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 3. 의정비 76%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부당성을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으므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잠정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인상률 명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반영하는 등 적법한 법정절차를 거친 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부당성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지역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 4. 정보공개 청구사항 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 이미 심의회에서 의정비지급기준을 결정한 후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하여, 동법 제9조제1항 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로 볼 수 없고
  - 회의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자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보호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 부분만을 가리고 부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의정비심의위원들의 비공개 요구와 동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임에 해당됨을 사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조치였음.

- ➔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처리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

## 5.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가 미비된 상태에서 매출전표만을 첨부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며
-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의원 개인의 사적경비나 의원 자신들의 격려비 및 주민의 대표인 공직자로서 공적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5명(훈계 3, 주의 2)

## 7 노원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서○○(노원구 중계본동)외 227명
- 청구일자 : 2008. 6. 19
- 감사대상 :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 청구요지

노원구의회는 2008년도 의정비를 2007년 11월에 5,60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적으로 2007년 12월에 5,480만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노원구의 의정비 인상은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부당·불법성의 의혹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시 분야별 단체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 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구청 부서(과)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구의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조회 등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법적 부적격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심의위원 선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공문으로 추천 의뢰하지 않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

- ➔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분야별 복수 이상의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및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심의위원들이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관련 세부지침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의 심의회 운영 미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문안 작성 등 심의회가 변칙적으로 운영되었으며
- 또한, 제2차 의정비심의회 시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2007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5,900만원(중·고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의 40대 후반 가구주)을 표준금액으로 삼아 의정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의정비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심의회를 운영하였거나, 부적절한 자료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은 문책
- ➔ 향후 의정비심의회 운영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 2. 주민여론조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주민설문조사 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 특별한 사유없이 지침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과 설문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설문결과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주민의견 수렴시 예산확보 등의 노력없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은 잠정결정한 의정비를 가지고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② 설문서 작성 및 내용의 적정여부 확인

●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는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 노원구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고, 의정비 총액기준 40%~68%의 인상을 전제로 설문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된 여론조사였다고 볼 수 없음

➔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 내용에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서는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3. 월정수당 84%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부당성을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는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부당성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회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지역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전년대비 인상률 명시)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조치

#### 4.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가 미비된 상태에서 매출전표만을 첨부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며
-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의원개인의 사적경비나 주민의 대표인 공직자로서 공적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1)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5명(경징계 1, 훈계 2, 주의 2)

## 8 구로구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진출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하○○(구로구 구로본동)외 213명
- 청구일자 : 2008. 6. 3
- 감사대상 : 구로구청 교육진흥과
- 청구요지

구로구청장이 공문으로 구청 공무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로서 구청공무원의 집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은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며, 공무원의 동 위원회 참석은 사적인 일임에도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참석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대규모 구청 공무원의 동 위원회 진출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됨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함.

### ■ 감사결과

#### 1. 구청장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구 직원을 추천 의뢰하고 참여시킨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2008. 3. 7 구로구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등의 사유로 “구로 교육발전 TOPS Community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 간부 30명을 관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참여시켜 구와 학교간 의사전달, 학교의 건의사항 등의 사전파악 및 학교 교육지원에 따른 홍보대사 역할 등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바
  - 구와 학교간 상호 의견전달은 위 계획 이전에도 구청장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학부모회장간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구정홍보는 물론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

- 또한 실제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직원(30명)의 운영위원회 평균참석률이 43%로서 매우 낮은 한편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직원도 2명이나 되었고, 더구나 지역위원으로 참석한 직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당초 구에서 의도한 구청과 학교간의 의사전달과 건의사항 등의 사전과약을 위한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 한편 구로구는 법령상의 지역위원 자격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급 학교장에게 간부 38명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 중 30명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들 중 23명은 구로구를 생활근거지로 하지 않는 타 지역 거주자들인가 하면 위 30명 모두 교육행정업무에 종사하지도 않고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도 않으며
-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적 장치로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이들이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간 57억여원의 학교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청장이 관내 38개 학교장에게 일률적으로 구 간부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중 30명이 선출되도록 한 것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위원 추천·선출 절차에 맞지 않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자율성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 더구나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구청장이 구 직원을 지역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학교운영에 관여하도록 하고 학교지원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도록 한 것은 구청장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고 실제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음.



- ➔ 구청장의 일률적인 요청에 의한 직원의 집단적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참여의 시정을 요구함.

## 2. 구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여부를 확인한 결과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직원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구로구에서 추진한 TOPS Community 계획에 따라 참여하였는바 이는 구청장의 직무명령이라 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결재를 받고 참여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은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음.

## 3. 구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특혜 여부를 확인한 결과

- 2008년도 학교보조금 지원예산이 구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학교와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차별하여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학교장의 사업의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2008년도 학교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구 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은 없었음.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1건(시정)
  - 구청장의 일률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구 직원의 집단적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참여의 시정을 요구함.

## 9 동대문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방○○(동대문구 휘경1동) 외 218명
- 청구일자 : 2008. 5. 8
- 감사대상 :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 청구요지

동대문구의회는 2007. 12. 10에 2008년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활동비 등을 제외하고도 월정수당을 77.7% 인상하였는바, 조례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위한 것임에도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

- ➔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2.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직종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수 추천만을 받아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는 법조계 및 언론계에는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일부 분야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

### ②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여부 확인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의정비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는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3.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적정여부 확인

-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금이 아니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내역의 적정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 특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품 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동료의원 격려비 및 경조사 화환 구입비 등을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
  -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2건(주의 2)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 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신분상 조치 : 4명(훈계 2, 주의 2)

## 10 서대문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신○○(서대문구 홍은동) 외 270명
- 청구일자 : 2008. 6. 23
- 감사대상 :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 청구요지

서대문구의회는 2007. 12. 11에 2008년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전년도 3,732만원보다 41.3% 오른 5,274만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 구청에서는 해당 분야별 단체에 직접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제외한 다른 분야로부터는 단수 추천만을 받아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구의회에서는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자를 접수받지 않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섭외하여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선정이었다고 할 수 없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 별 단체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지 않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②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정 적정여부 확인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한 입법취지는 의정비심의회 구성의 투명성과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회 명단은 회의가 소집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개시되면 바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 의정비 지급수준금액이 결정된 2007.10.31에 가서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에 미달하는 5명만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간과하였음
- ➔ 의정비심의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간과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 및 관련 지침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위한 것임에도
  - 서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ARS 전화조사 응답자의 65.2%가 4,3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274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3. 의정비 41.3%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의정비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던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기준과 의견수렴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 특히, 개정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서 의정비심의회가 최종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의 투명성과 다수의 합의에 의한 적정한 결정을 위해 특별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7.10.31.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없이 5명만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결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7.10.31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의정비심의회의 결정과 구의회의 조례 개정이라는 절차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면 구의회는 무효인 결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 비록 구의회에서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상의 하자는 구의회의 개정조례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고
-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 개정 조례가 효력이 없다면 당연히 조례 개정으로 실효된 개정전 조례의 효력이 살아난다 할 것이므로, 개정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원들에게 2007년도에 비하여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서대문구에서는 구의원 1인당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1,542만원씩을 환수(총 24,672만원 = 1,542×16명) 조치해야 할 것임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 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효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의정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환수하도록 시정조치할 것

#### 4.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①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적정여부 확인

●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급이 아니고, 매월 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 ②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예산과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과목구분의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시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의원들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함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증빙자료도 없이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감사결과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2건(시정 1, 주의 1)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효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금액은 환수하도록 시정조치(시정)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재정상 조치 : 1건, 총 246,720,000원(15,420,000원×16명)(환수)

- 구의회 의원 1인당 15,420,000원 환수조치

[15,420,000원 = 52,740,000원('08년도 의정비) - 37,320,000원('07년도 의정비)]

- 신분상 조치 : 4명(경징계 1, 훈계 2, 주의 1)

## 11 서대문구 북아현 ○지구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이○○ 외 207명
- 청구일자 : 2008. 8. 8
- 감사대상 : 서대문구청
- 청구요지

북아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정의 위법·부당성 여부와 추진위원회의 불법운영 및 주민총회시 불법선거에 대하여 감독권자인 서대문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기존 추진위에만 동의서 징구권한을 부여하고, 확장부지 주민에게 추진위원회 설립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서대문구 행정행위의 적정 여부 확인

- 서대문구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지정(2006. 10.19)으로 기존의 북아현·충정재개발구역(구역면적 72,000㎡, 토지등소유자수 873명)이 북아현○ 재정비촉진구역(구역면적 262,890㎡, 토지등소유자수 2,55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처리계획 구청장 방침(뉴타운사업과-688, 2008.2.5)을 수립하여 “구역확대 이전에 기존 승인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1년 이내에 확대된 구역의 동의를 받아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결정”한 서대문구청의 행위가 적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 국토해양부 예규(주정58531-102, 2004.1.14) 및 서울시 예규(주거정비과-15006, 2007.9.19)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이 확대된 경우에는 기존 추진위원회를 변경승인토록 회신한 바 있으며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경우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행정질서의 유지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추진위원회를 변경승인토록 한 것은 승인권자인 자치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한의 범위내인 것으로 판단됨.



## 2.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부당여부 확인

-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과정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08.3.17 운영규정 신고사항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처리하면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100명 이상인 경우 100명)을 충족한 경우에 변경승인하여야 함에도 추진위원수가 66명으로 동 기준에 미달함에도 변경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승인시 추진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신고토록 조건(안내사항)을 부여하고도 이행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2008.9.22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을 2008.9.27 인가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되었음.
- ➔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수가 운영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수에 미달됨에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을 추가 신고하지 않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과정이 부적정하게 되었는데 바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조치
- ➔ 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잘못처리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

##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공개 적정여부 확인

-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2008.7월경 추진위원회에 공개 요구한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인지와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인터넷 카페(북아현재정비○구역)에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문서로 공개 요구한 자료가 없으며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관련 자료의 공개가 도시정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또한 2008.11.28 동일사안에 대한 서부지방 검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청구인이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한편, 뉴타운사업과에서는 2008.7.18 청구인이 제출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전자민원을 2008.7.25 회신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거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의 확인은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인터넷에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행정지도만 하고 회신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

#### 4.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 및 설계비 지급의 적정여부 확인

● 2005.7.12 승인된 기존 북아현·충정구역 추진위원회가 2006.5.29 설계자와 계약한 내용 중 조합설립준비에 필요한 설계용역이외에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용역은 조합원 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용역기간을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내로 정한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이후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은 조합이 정관에 따라 설계자를 재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종전 북아현·충정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지급된 설계비용을 확대된 구역에서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동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설계자와의 계약내용 중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용역은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토록 한 도시정비법령에 위반되므로 조합이 정관에 따라 설계자를 재선정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람.



## 5. 조합설립인가시 인가권자의 정관 검토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 서대문구에서 2008.9.22 북아현 0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이 제출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정관을 2008.9.27 인가하면서, 동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음에도 종전 북아현·충정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2006.8.10 가계약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정관 인가시에는 시공자의 선정방법을 명확히 한 정관을 인가하여 더 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 ➔ 조합설립인가시 시공자 선정방법이 불분명한 부적정한 정관을 인가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 조합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바, 시공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한 정관으로 개정하도록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조합원간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정관 검토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

### 【감사결과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4건(시정 2, 주의 2)
  -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부적정 및 조건이행 확인 소홀 (주의)
  - 정비사업 자료공개 관련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주의)
  -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설계자 선정 부적정 (시정)
  - 조합설립 인가시 인가권자의 정관 적정여부 검토 부적정 (시정)
- 신분상 조치(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북아현 0구역 주민감사결과와 병합하여 처분)
  -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부적정 및 조건이행 확인 소홀
  - 정비사업 자료공개 관련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조합설립 인가시 인가권자의 정관 적정여부 검토 소홀

## 12 구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고○○(구로구 구로본동) 외 203명
- 청구일자 : 2008. 8. 18
- 감사대상 : 구로구청, 구로구의회
- 청구요지

구로구의회는 2007. 12. 10 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도 의정비 총액을 3,636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45.2% 대폭 인상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관한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함.

### ■ 감사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 구청에서는 법조계 및 언론계로부터는 단수추천 만을 받았고, 주민등록 열람으로 관내 거주요건 만을 확인한 후 별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며
  - 구의회에서는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자를 접수받지 않고 의장단에서 직접 섭외하여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아 구로구의회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제1대~4대까지 구로구의회 의원이자 현 구로구○○회 회장인 최○○와 제2대 구로구의회 의원이었던 서○○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할 수 없음

-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지 않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위한 것임에도
  - 구로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ARS 전화조사 응답자의 81.9%가 3,500~4,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28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 3. 의정비 45.2%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의정비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던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4.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예산과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과목구분의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시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명목이나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구의회 의원에게 국외여비와는 별도로 현지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하였는바, 앞으로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감사결과 조치사항 】

#### ● 행정상 조치 : 2건(주의 2)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 신분상 조치 : 4명(훈계 2, 주의 2)

## 13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 관련 주민감사

### ■ 감사개요

- 청구인 : 황○○(노원구 중계3동 514-3) 외 260명
- 청구일자 : 2008. 11. 11
- 감사대상 : 노원구청
- 청구요지

사회복지법인 '△△원'은 199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노원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 31일 재위탁 심의 위원회로부터 '△△원'은 부적격(평가점수 60점 미만) 판정을 받았으나 심의 회의 결정은 심의절차 및 회의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난 권력 남용 행위로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함.

### ■ 감사 추진경과

- 주민감사 청구 : 2008. 11. 11
- 대표자 증명 및 위임장 교부 : 2008. 11. 14
- 청구인 명부 제출 : 2008. 11. 29
-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2008. 11. 20 ~ 11. 29
-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 2008. 12. 9
- 감사실시계획수립 및 감사실시 통보 : 2008. 12. 11
- 수감기관 방문감사 : 2008. 12. 15 ~ 12. 19 (5일간)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



## 별첨 2. 청렴계약감시활동 처리내역(2008년도)

연번	감시일시	건명	현장 감시자		조치요구(지적)	
			감사관	직원	일시	내용
1	07/01	영등포정수장재 건설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박형채외 4명	박병환외 3명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변경 부적정(시기 및 내용)</li> <li>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공정관리 부적정</li> <li>하도급 관리 부적정(공정거래)</li> </ul>
2	07/08	은평2지구A공구	박형채외 3명	박병환외 3명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지급 부적정</li> <li>감리발주시 낙찰자 선정 불합리</li> </ul>
3	07/15	지하철910공구 건설공사	박형채외 3명	박병환외 3명	1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기한 연기시 산출근거 명시</li> <li>'08년 12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관리</li> <li>스크린도어 목적지 표시 가능토록 조치</li> </ul>
4	07/22	천호대로 (방아다리~시계) 확장공사	신영철	이영관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 완료후 시설공사 발주로 예산절약</li> <li>하도급률 산정 부적정</li> </ul>
5	07/29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	신영철 김경수	이영관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하도급 신고서 검토시 보험료 적용여부를 심사하지 않음</li> </ul>
6	08/01	은평3지구A공구	신영철 김경수	오장환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공사기간, 소요예산) 확정 지연</li> <li>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만회대책 미수립</li> </ul>
7	08/12	지하철907공구 건설공사	박형채외 4명	박병환외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li> <li>2006.7월 안양천 붕괴 원인 부적절</li> </ul>
8	08/14	난곡신교통수단 (GRT)건설공사	신영철	이영관	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적인 하도급계약 체결 사례 발굴</li> </ul>
9	08/26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신영철 정재실	이영관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사대교 복단 구리시구간 공정관리 철저</li> </ul>
10	09/02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4공구)	신영철	이영관	2009 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관리 철저</li> <li>부실설계업체 감독 철저</li> <li>설계비 계상 현실화</li> </ul>
11	10/07	동남권이주전문 상가 가블럭건립	김경수	오장환 이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성지급분과 ES조정내역 중복 및 TAB공사 비목분류 적정여부 재검토</li> </ul>

연 번	감시 일시	건 명	현장 감시자		조 치 요 구(지적)	
			감사관	직 원	일시	내 용
12	10/14	서울의료원신축	이경섭외 2명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가 입찰(66%) 현장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li> <li>•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 및 변경 계약</li> </ul>
13	10/21	강일지구2,4단지 아파트 건립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리 등 지적사항 없음</li> <li>• 현황 서류 미비 보완</li> </ul>
14	10/21	강일지구6,8단지 아파트 건립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리 등 지적사항 없음</li> <li>• 현황 서류 미비 보완</li> </ul>
15	10/28	한강교량 내진 성능보강 공사	신영철 정재실	이영관 강성원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좌장치 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품질 검증 방안 미흡</li> <li>• 품질시험계획 이행 미확인</li> </ul>
16	10/28	노인전문병원(양천 메디컬센터) 신축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조사로 택지개발사업 지연</li> <li>• 원활한 업무협의로 조속한 부지인수 추진</li> </ul>
17	11/4	장지지구1단지 아파트 건립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지연 적정여부 검토</li> <li>• 조속한 설계변경 추진</li> </ul>
18	11/18	세운상가4구역 정비사업 신축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사업 시공사 선정 적정여부 검토</li> <li>•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li> </ul>
19	11/18	지하철 1~3호선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현장	이경섭 신영철 김경수	박병환 이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계약관리 부적정</li> <li>• 실명제 미실시</li> <li>• 현장감독 미실시</li> </ul>
20	12/02	서울시청사 증축공사	김경수의 4명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연 적정성 검토</li> <li>• 조속한 설계변경 추진</li> </ul>
21	12/02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최성권의 4명	오장환		결과보고서 작성 중
22	12/09	영등포 막여과 정수장 건립	김경수	오장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이사항 없음</li> <li>• 막여과 설비공사 착수후 재점검 필요</li> </ul>
23	12/22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4공구)	신영철	이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과다 소요 등</li> </ul>

# 청렴계약감시활동 처리내역

## ■ 감시결과 조치내용

(단위 : 건)

계	시정권고	주의촉구	현지시정	제도개선 (횡단전개)	비 고
24	6	8	6	1	진행중 3

### 1 영등포정수장 정비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화동
- 공사기간 : 2006. 11 ~ 2010. 05
- 공사규모
  - 정수장 재건설 : 2개소 30만톤/일
  - 고도정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관리본관신축 등
- 사업비 : 1,240억원

#### □ 감시일시 : 2008. 7. 1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공정관리 분야 : 계획공정 대비 3개월 지연
- 설계변경 분야 : 하도급관리 부적정
-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하도급계약 수정

#### □ 참 석 자 : 박형채, 최성권, 신영철, 김경수, 이경섭

## 2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내·외동
- 공사기간 : 2006. 2 ~ 2008. 12
- 공사규모
  - 아파트 31개동(지하2층, 지상 6~20층) 1,769세대
  - 연면적 257,476m<sup>2</sup>
- 사 업 비 : 236,034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07.08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준공기한 연기 : 통일로 저축 근생 부분 공정 만회대책 수립

### □ 참석자 : 박형채, 최성권, 신영철, 김경수, 이경섭(김교선 자문위원)

## 3 지하철 9호선 910공구 건설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 공사기간 : 2002. 03 ~ 2008. 12
- 공사규모
  - 총연장 : 2,100m, 정거장 : 2개소, 환기구 6개소
- 사 업 비 : 1,399억원

### □ 감시일시 : 2008.07.15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준공기한 연기시 귀책사유를 철저히 규명(산출근거 제시)
-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한 행선지 식별이 곤란하므로 보완대책 강구

### □ 참석자 : 박형채, 신영철, 김경수

(주재건, 전명일, 이수환, 김희욱 자문위원)

#### 4 천호대로(방아다리~시계) 확장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시계)
- 공사기간 : 2005. 11 ~ 2008. 12
- 공사규모
  - 도로확장 : 폭 6차로 ⇒ 8~10차로, 연장 : 3,140m
  - 교량 및 보도육교 신설 각 1개소
- 사업비 : 180억원

##### □ 감시일시 : 2008. 07. 22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보상지연으로 공정관리가 부실, 향후에는 보상 후 시설공사 발주
- 하도급률 산정이 부적정하므로 시정조치

##### □ 참석자 : 신영철(전명일 자문위원)

#### 5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 공사기간 : 2006. 01 ~ 2008. 10
- 공사규모
  - 차고지 건설 : 2개소 30,289 $m^2$
  - 건축 : 4개동 9,430 $m^2$
- 사업비 : 103억원

##### □ 감시일시 : 2008. 07. 29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계약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 보증률 명시
- 하도급신고시 보험료 적용여부를 심사토록 할 것.

##### □ 참석자 : 신영철, 김경수

## 6 은평뉴타운 3지구 A공구

###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내·외동
- 공사기간 : 2007. 05 ~ 2011. 01
- 공사규모
  - 아파트 29개동(지하2층 지상15층) 1,469세대
  - 연면적 155,988.34㎡
- 사업비 : 239,343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08.01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사업관리 부적정 : 계약시 준공기한을 착공 후 840일로 정하고 사업착수를 1년 이상 지연함.

### □ 참석자 : 김경수, 신영철

## 7 지하철 9호선 907공구 건설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
- 공사기간 : 2001. 12 ~ 2008. 12
- 공사규모
  - 총연장 : 2,075m(정거장 2개소, 환기구 6개소)
- 사업비 : 1,372억원

### □ 감시일시 : 2008. 08. 12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공정관련 :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
- 수해복구관련 : 2006년 7월 안양천 붕괴원인 규명 및 후속조치 미흡

### □ 참석자 : 박형채, 최성권, 신영철, 김경수, 이경섭



## 8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난곡 재개발사업지~신대방역
- 공사기간 : 2006. 1 ~ 2009. 6.
- 공사규모
  - 총연장 : 3,110(토로확장 2~4차로⇒6차로, 정류장 6개소)
- 사업비 : 2,706억원

### 감시일시 : 2008. 08. 14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하도급률, 조건 등 모범적인 하도급 계약사례 발굴
-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 수범사례 전파

### 참석자 : 신영철

## 9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아천동
- 공사기간 : 2006. 4 ~ 2011. 03.
- 공사규모
  - 총연장 : 2,740m(교량건설 1,130m, 연결도로 ,1,610m)
- 사업비 : 2,773억원

### 감시일시 : 2008. 08. 26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암사대교 복단 구리시 구간 보상 지연으로 공기지연 우려(공정관리 철저)
- 수범사례 :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 전개

### 참석자 : 신영철, 정재실

## 10 자양취수장 이전공사(4공구)

### □ 사업개요

- 위 치 : 성동구 자양동~ 구의동 일대
- 공사기간 : 2006.12.19~2008.12.18
- 공사규모
  - 도수관 부설공사 : D=1,500m, L=4,059m
- 사업비 : 190억원

### □ 감시일시 : 2008. 09. 02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지하매설물 조사 부실 등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 철저
-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약기간 내 공사완료

### □ 참석자 : 신영철

## 11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가블럭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내
- 공사기간 : 2005. 11 ~ 2008. 12
- 공사규모
  - 생활용품 판매동(지하5층, 지상11층), 연면적 426,635 $m^2$
- 사 업 비 : 531,100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0.07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처리 적정성
- 입주상인의 분양가격 인하 요구 민원처리 적정성
- 공정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 실태 등

### □ 참석자 : 김경수

## 12 서울의료원 신축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371-6(신내2택지개발지구내)
- 사업기간 : 2006. 1 ~ 2010. 5
- 공사규모
  - 종합병원 1개동(지하3층, 지상13층) 620병상, 연면적 92,884 $m^2$
- 사 업 비 : 188,252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0.21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사업계획 변경 추진 적정여부
- 현장관리 실태

### □ 참석자 : 김경수, 이경섭, 정재실

## 13 강일지구 2, 4단지 아파트 건립

###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하일동 강일택지개발지구내 2,4단지
- 공사기간 : 2006. 9.26 ~ 2009. 2.23
- 공사규모
  - 강일지구 2단지 : 9개동(지하2층, 지상 11~14층) 442세대
  - 강일지구 4단지 : 10개동(지하2층, 지상 11~15층) 748세대
- 사 업 비 : 82,756백만원(건축공사비)

### □ 감시일시 : 2008.10.21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보상지연으로 3개월 착공지연 되었으나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임.
- 특별분양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람.

### □ 참석자 : 김경수

## 14 강일지구 6, 8단지 아파트 건립

###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하일동 강일택지개발지구내 6,8단지
- 공사기간 : 2006. 9.26 ~ 2009. 2.23
- 공사규모
  - 강일지구 6단지 : 10개동(지하2층, 지상10~15층) 553세대
  - 강일지구 8단지 : 9개동(지하2층, 지상 5~14층) 963세대
- 사 업 비 : 70,112백만원(건축공사비)

□ 감시일시 : 2008.10.21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보상지연으로 3개월 착공지연 되었으나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임.
-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 민원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해소 바람.

□ 참석자 : 김경수

## 15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 사업기간 : 2008.05.16 ~ 2009. 12. 31
- 공사규모
  - 올림픽 대교 및 암사대교에 대한 내진보강(교좌장치, 점성댐퍼, 전단키 등)
- 사 업 비 : 51억원

□ 감시일시 : 2008.10.28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교좌장치 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품질검증 방안 미흡사항 시정조치
- 품질시험계획 이행 미확인 : 확인토록 시정조치

□ 참석자 : 신영철, 정재실

## 16 노인전문병원(양천 메디컬센터)신축

###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780일대(신정택지개발지구 내)
- 사업기간 : 2006.12 ~ 2010. 5
- 공사규모
  - 노인전문병원 1개동(지하4층, 지상7층) 350병상
  - 건폐율 : 45.65%, 용적률 : 163.82%, 연면적 35,766.92 $m^2$
- 사 업 비 : 83,343백만원(토지매입비 20,820백만원 포함)

### □ 감시일시 : 2008.10.28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문화재 조사로 택지개발사업 지연되어 SH공사로부터 사업부지가 인수되지 않아 실제 착공되지 않았음.
- 관계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의로 조속히 부지 인수 추진 바람.

### □ 참석자 : 김경수

## 17 장지지구1단지 아파트 건립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94-2
- 공사기간 : 2008. 1.21 ~ 2009. 11.12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지하2층, 지상 10층) 221세대, 1,808 $m^2$
- 총사업비 : 68,394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1.4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지장물 보상 및 철거에 따른 착공 지연 걱정여부 검토
- 배치 및 층수 변경되었으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중이므로 조속한 설계변경 추진

### □ 참석자 : 김경수

## 18 세운상가4구역 정비사업 신축

###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일대
- 사업기간 : 2004.5 ~ 2013.12
- 공사규모
  - 용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 지하7층, 지상36층 7개동 / 용적률 : 840.73%
  - 연면적 : 353,728 $m^2$  / 사 업 비 : 1,111,576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1.18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사업시행자가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본 공사는 착공되자 않았음.
- 임시이주상가(지하2층 지상7층 23,763 $m^2$ )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중임.
- 시공사 선정 적정성 검토

### □ 참석자 : 김경수, 이유림(자문위원)

## 19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 사업개요

- ① 1~4호선 지하구조물(35개 구간-30.365 $km$ )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 구조형식 : 본선구조물 및 정거장
  - 계약금액 : 3,013백만원(1 $km$ 당 9,923만원 상당)
  - 사업기간 : 2007.3.20부터 480일간(2008.7.11)
- ② 1~3호선 지하구조물(31개 구간-24.5 $km$ )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 구조형식 : 복선 Box 및 Tunnel, 옹벽구조물
  - 계약금액 : 2,295백만원(1 $km$ 당 9,367만원 상당)
  - 사업기간 : 2008.3.18부터 480일간(2009.7.11)
- ③ 2~4호선 지하구조물(7개 구간-9.7 $km$ )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 구조형식 : 복선 Box 및 Tunnel, 옹벽구조물
- 계약금액 : 1,129백만원(1km당 11,557만원 상당)
- 사업기간 : 2008.3.13부터 300일간(2009.1.7)
- 감시일시 : 2008.11.19 (수) 00:20~04:00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용역 계약관리 부적정 ☞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외업인력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지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조치
  - 실명제 미실시 ☞ 구간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터널내 일정간격으로 부착하고 용역보고서에도 포함하도록 조치
  - 현장감독 부적정 ☞ 용역작업 장소별로 현장 감독자를 임명하도록 조치
- 참석자 : 이경섭, 신영철, 김경수 (주재건, 김희욱 자문위원)

## 20 서울시 청사증축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31일대
  - 사업기간 : 2006.5.15 ~ 2011.2.28
  - 공사규모
    - 용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5층, 지상13층 1개동
    - 용적률 : 840.73% / 연면적 : 97,060m<sup>2</sup>
  - 사 업 비 : 228,800백만원(공사비 156,500백만원 포함)
- 감시일시 : 2008.12.16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사업지연 적정여부 검토
  - 조속한 설계변경 추진 방안 검토
  - 후속 조치 검토 중
- 참석자 : 김경수, 최성권, 신영철, 이경섭, 정재실, 김교선, 전명일, 김희욱(자문위원)



## 21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

###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및 사직로 일원
- 사업기간 : 2007.12.31 ~ 2009.6.30
- 공사규모
  - 세종로 중앙광장 조성(폭 34m내외, 연장 550m)
  - 세종로(연장 740m) 및 사직로(연장 400m) 보차도 정비
- 사 업 비 : 41,500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2.16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공정관리 적정 여부 검토
- 특이사항 없음

### □ 참석자 : 김경수, 최성권, 신영철, 이경섭, 정재실, 김교선, 전명일, 김희욱(자문위원)

## 22 영등포 막여과 정수장 건립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화동 1-29(영등포 정수장내)
- 사업기간 : 2007.12 ~ 2009. 5
- 공사규모
  - 용도 : 막여과 시설을 위한 기반 및 토목공사, 정수장
  - 지하1층 지상2층 1동, 연면적 4,212 $m^2$
  - 막여과 시설 5만 $m^3$ /일 (침지식 2.5만, 가압식 2.5만)
- 사 업 비 : 23,200백만원

### □ 감시일시 : 2008.12.9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공정관리 적정함.
- 특이사항 없음.

### □ 참석자 : 김경수, 김희욱(자문위원)

## 23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4공구)

###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광명시 소하동
- 사업기간 : 2001.12.29 ~ 2010. 12. 30
- 공사규모
  - 도로 및 교량건설(토공구간 : 1,319m, 교량 1,161m)
- 사업비 : 986억원

### □ 감시일시 : 2008.12.22

### □ 주요 활동 및 조치결과

- 잦은 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과다 소요
- 준공기한이 지연되어 민자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제공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 □ 참석자 : 신영철, 정재실